

의안번호	2217993
의 퇴 인	최기상의원
회 답 일	2026.7.21.
추계번호	26B177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료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갖추어야 할 주택품질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억원(연평균 2,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주택품질기준 등 (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	100	-	-	-	-	100	20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만을 유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전체 재정소요액은 향후 주택품질기준, 조사방법, 주거환경 개선 범위 등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의2 신설 (주택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갖추어야 할 주택등의 품질 기준(이하 “주택품질기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하여야 한다.(제1항) 1. 주택등이 포함된 건축물이 구조적 안전성을 충족할 것 2. 주택등이 온수 급수 시설을 포함한 급수·배수 시설, 전기 시설, 냉·난방 시설, 화재 방지 시설 등 필수적인 주거시설을 갖출 것 3. 주택등이 해당 주택등의 거주자가 해충·곰팡이·유해물질 등 위생·건강을 저해하는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주 환경을 유지할 것 4. 그 밖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위생·건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에 따른 신청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에서 임차료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 또는 임차료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주택품질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해당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제2항) 1. 주택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등의 정보 제공 2.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와 관련된 정보 제공 3.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주택품질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과 연계를 통한 주거안정 지원	의무규정 재량규정
2	안 제10조 (신청조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료의 지급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의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u>조사(이하 “신청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u>(제1항) <u>2. 해당 주택등의 주택품질기준 충족에 관한 사항<신설></u>	의무규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선유지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u>조사를 하여야 한다.</u>(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11조 (확인조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u>주거급여가 지급되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모든 주택등에 대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u>(제1항) <u>이 경우 본문에 따른 확인조사가 아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 경우에는 확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후단 신설></u> <u>2.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품질기준 충족에 관한 사항<신설></u>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2조제2항 신설 (조사의 의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제2항)<신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주택품질기준 등)	○	• (추계) 주택품질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산
	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주택품질기준 등)	×	• (제3호)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조사 또는 확인조사에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주택품질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주거환경 개선지원, 주거복지정책과의 연계 지원 등을 실시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런데 주택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 수에 대한 통계가 부재하며, 주거환경 개선 지원 기준, 방식·범위 및 재정분담비율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안 제10조 (신청조사)	×	• (제3호) 개정안에 따라 신청조사가 의무사항으로 전환되고, 확인조사 대상이 전체 수급가구가 거주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도록 확대되며, 주택품질기준 충족여부가 조사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 건수 및 필요 인력·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조사와 확인조사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사방법·절차, 확인조사를 갈음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관한 조사”의 범위, 그리고 조사에 지원되는 인력 및 예산의 구체적인 기준·규모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조사 건당 필요인력, 소요비용 등을 현 시점에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3	안 제11조 (확인조사)		
4	안 제12조제2항 신설 (조사의 의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 부칙을 참고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료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갖추어야 할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로,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아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산함
 - (추계방법) 현재 주택품질기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 연구용역 사업비를 참고하여 추계기간 동안 1회의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유사사례) 국토교통부 내 최저주거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인 「최저주거기준 조정 및 유도주거기준 정립방안 연구」의 2025년 사업비 1억 원을 적용함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료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갖추어야 할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

[표 2] 주택품질기준 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주택품질기준 마련	100	-	-	-	-	100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만을 유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전체 재정소요액은 향후 주택품질기준, 조사방법, 주거환경 개선 범위 등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만을 유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전체 재정소요액은 향후 주택품질기준, 조사방법, 주거환경 개선 범위 등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388-3735	jangwy93@nabo.go.kr